의 안 번 호	2458	【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】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8. 22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8. 22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9. 8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, 보호자 부담을 덜어 장애인의 자립과 포용적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○ 보험 가입(안 제3조)

○ 보험회사 선정(안 제4조)

○ 보험료 납부(안 제5조)

○ 보험의 보장내용 등(안 제6조)

○ 보험금 청구 등(안 제7조)

○ 보험금 지원 제외(안 제8조)

다. 근거법규

○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4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순정)

○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돌발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지원함으로써

○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주요내용은 보험가입 대상, 보험회사 선정, 보험료 납부, 보험 보장내용, 보험료 청구방법 및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

○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발달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.
   가. 지적장애인: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
   나. 자폐성장애인: 소아기 자폐증,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· 신체표현 · 자기조절 ·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
   다.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2. “보호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 가.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3호의 보호자(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)
   나.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
   다.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「민법」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
   라.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(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)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,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.